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추진계획

2014. 3.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추진계획

□ 설명회 개요

구 분	내 용
행사명	시·도교육청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담당자 설명회
일 정	'14. 3. 28(금) 13:00~16:00
장 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16층
대 상	전국 시도교육청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담당자
내 용	제도설명, 보상금 지급기준 설명, 고시일정 안내
주최 및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일정표

시 간	내 용
13:00~13:30(30)	환영사 및 오리엔테이션
13:30~15:00(90)	제도설명 및 일정 안내
15:00~16:00(60)	의견수렴 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목 차

Ⅰ. 보상금 제도 개요 7

1. 도입 취지 8
2. 법적 근거 9
3. 기대 효과 11
4. Q & A 12

Ⅱ. 보상금 고시안 17

Ⅲ. 보상금 지급 기준 21

Ⅳ. 보상금 제도 이용 안내 27

1. 보상금 지급 28
2. 보상금 분배 30
3. 실태조사 32

Ⅴ. 이용 가능 저작물 범위 37

1. 교육목적저작물이용지침 38
2. 저작물 이용 예시 및 사례 43
3.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경고 문구 46

Ⅵ. 추진 일정 48

Ⅶ. 약정서(안) 50

Ⅷ. 참고 자료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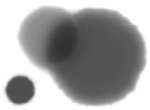

Ⅰ. 보상금 제도 개요

1. 도입 취지
2. 법적 근거
3. 기대 효과
4. Q & A

Ⅰ. 보상금 제도 개요

1. 도입 취지

ㅇ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ㅇ 2009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실제 수업의 주체가 되어 수업을 담당하는 자만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은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위해 저작물의 복제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업지원을 위한 자료의 제작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ㅇ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위해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실제 이 같은 행위를 통해 교수학습자료를 제공받아서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저작권법은 각 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추후 보상금만 지급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습니다. 이것을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라고 합니다.

2.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4.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배포·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22>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22>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개정 2009.7.22>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3. 기대효과

가. 수업지원자료의 질적 향상

o 학교 교육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온라인 학습과 자기 진단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개발 시 사용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사전에 개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교육지원기관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육지원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는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o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한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는 보상금 제도를 두어 교육활동에 있어서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및 법적 안정성 확보

o 저작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국내외의 공표된 모든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활용 가능하므로 교수학습자료 제작을 위해서, 공표된 모든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허락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업무 처리 단계가 간소화되어 시간적・인력적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o 지난 2011년 교육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따라 보다 활발한 교육 자료의 생산과 활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도를 통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교육지원기관들의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행법 상 보상금 처리가 가능한 범위는 '저작재산권'에 한합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초상권' 등을 포함한 '저작인접권' 문제의 경우는 현행법상 보상금 처리대상이 아니므로 인물사진 수록 시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저작인접권' 단체들과 함께 '저작인접권' 역시 보상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Q & A

가. 보상금제도로 교육지원기관의 저작물 이용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첫째,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사전이용허락을 얻고 그 과정에서 대가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약정하여야 하나,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절차는 면제되고 사후에 보상금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둘째,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까지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2014.07.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이 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원격교육이 날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교육지원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제도가 이용허락과 다른 점은?

A. 보상금제도는 저작물의 쉽고 편리한 이용이 요구되는 특별한 범위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되 사후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 제도입니다.

<표> 제도 비교표

구 분	보상금제도	이용허락
시 점	저작물 이용 후	저작물 이용 전
관리주체	보상금 수령단체의 일괄관리	각 저작권자의 개별관리
저작권자의 권리	보상청구권만 행사 가능	독립·배타적 권리(재산권)
이용절차	저작권자 이용허락 불필요, 사후 보상금 지급의무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필요, 불허 시 이용 불가
비용지급	문화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수령단체에 지급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급
이용저작물	공표된 저작물	저작권자로 부터 허락받은 저작물
이용형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시 또는 공중송신* * 2014.07.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저작권자 허락 범위 내
기 타	저작권자의 재산권 제한으로 시간・경제적인 면에서 이용자에게 유리	모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유리

다. 보상금제도 상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는?

A. 제도를 통해 공표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학교 및 교육기관의 범위 (예시)

구 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이용허락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예시)	평생교육법	- 각종 평생교육기관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의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공공직업훈련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기관	
유아교육법		- 유치원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의무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 공민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등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의무
고등교육법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기술대학 등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 (예시)		- 시도교육청 - 교육연구정보원 - 국립특수교육원 - 국사편찬위원회 - 유아교육진흥원 등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지급 의무**

라. 저작물의 이용 범위는?

Q. "수업지원목적" 이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업지원목적'이라 함은 지역 내 교사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의미합니다.

Q.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양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수업지원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 사진1컷 등)

여기서 '공표'라 함은 미술작품의 전시, 서적의 발행, 학술논문의 게재, 홈페이지공개, 영화개봉, 음반의 판매 등 저작물이 일반에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마. 보상금을 왜 지급하여야 하나요?

Q.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교육지원기관의 수업지원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인 저작권(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Q.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지원기관에서 수령단체가 요청한 기한까지 약정 방식(포괄 또는 종량)을 선택하여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약정체결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후에 교육지원기관에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바. 보상금은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Q.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A. 보상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금은 개별 저작권자가 아니라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고시 제2013-36, 2014. 1. 6)

보상금 수령단체는 저작자들의 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단체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이용자로부터 받아 이를 개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보상금 수령단체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유일합니다.

Q.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A.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그리고 동법 제31조의 '도서관보상금'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아 개별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보상금 수령단체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상 허가받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써, 작가·학자 등 저작권자와 출판자 등이 회원인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협회의 모든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기적인 업무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사.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Q.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A.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Ⅱ. 보상금 고시안」참조(18p.)

Q. 이용 할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 협회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청구할 계획입니다.
☞「Ⅳ. 보상금제도 이용안내」참조(28p.)

Q. 어떻게 지급하나요?

A. 세부 사항은 약정에 근거합니다. 간략한 지급 절차와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Ⅳ. 1. 다. 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참조(29p.),「Ⅵ. 추진 일정」참조(48p.)

아. 어떻게 사용되나요?

Q. 징수한 보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A. 보상금은 권리자에게 전액 분배되며, 보상금의 징수, 분배 등에 필요한 절차 소요비용 등은 수령단체 수수료로 공제됩니다.

Q. 분배하고 남은 미분배 보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A. 보상금 수령 거부,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배공고 3년까지 분배를 위해 보관하며, 기간 중에 저작자가 나타나면 해당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분배공고 3년이 경과할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하는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자라면 어떻게 분배 받을 수 있나요?

A.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 분배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시면 권리관계 확인 이후 14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분배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A. 외국에서도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일정부분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만, 허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처럼 복제·전송·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허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대부분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내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저작권자 사전허락, 저작권료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보상금 제도에 비하여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 소요가 이용자에게 발생 될 것입니다.
* 2014.07.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차. 기출문제를 모아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A.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소속된 교원과 학생에게 복제, 배포, 전송 할 수 있으며,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수령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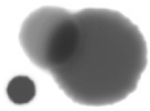

Ⅱ. 보상금 고시안

Ⅱ. 보상금 고시안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00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5. **납부방법**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아래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납부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교육지원기관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5%이내(최대 30초), 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350원으로 함

2) 기준에 대한 해석

○ "교육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구성원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이에 해당됨

○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방식"은 이용 교원 및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으로, 2014년도 보상금액을 표기한 것임

○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7. 참고사항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생들의 학력을 보충하고 심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특정수업을 지원.
- 교원(수업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 강사 등을 말한다.)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지원

○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교원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지원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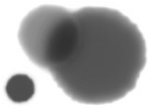

Ⅲ. 보상금 지급 기준

Ⅲ. 보상금 지급 기준

1. 종량방식

☐ **종량방식 단가**

○ 어　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　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근거**

○ 기 시행중인 수업목적보상금 지급 기준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2014.02.26)

2. 포괄방식

☐ **포괄방식 단가 : 학생 1인당, 350원**

☐ **산출근거**

○ (조사방법) 전국 장학사 대상 실태조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이트 대상 현장조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사용규모 파악
○ (산출방식) 어문저작물(책, 논문, 사진, 도면 등) 사용량을 파악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손실과 사용자의 경제적 편익을 도출
※ 음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저작물 이용은 미포함
○ (포괄방식 계약 단가)는 저작자의 최소 보상보장액(350원)과 이용자 편익(1,760원)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350원으로 선택
※ 실태조사 결과 ('14.1월, 현대정책연구원)

가. 보상금 요율의 추정

<실태조사 및 요율추정 프로세스>

실태조사

↓

보상대상 저작물의 식별 및 분류

↓

보상단가 적용
(문체부 수업목적보상금 고시단가)

↓

연간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총규모 도출

↓

포괄방식 단가 산출

↓

포괄방식 단가 결정

1) 실태조사 개요

o 수업지원 목적의 자료 작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저작물 분야 및 조사방식>

구 분	구 분	자료의 형태	비 고
어문자료	오프라인 수업지원자료	인쇄물, 복사물	설문조사
	온라인 수업지원자료	PDF, HWP, DOC 등 파일형태	설문조사 온라인 조사
멀티미디어 자료	오프라인 매체	CD, DVD, 테이프 등	설문조사
	온라인 자료	동영상 파일, 애니메이션 등	온라인 조사

※ 보상금 요율 산정에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저작물 이용은 미포함

<보상금 적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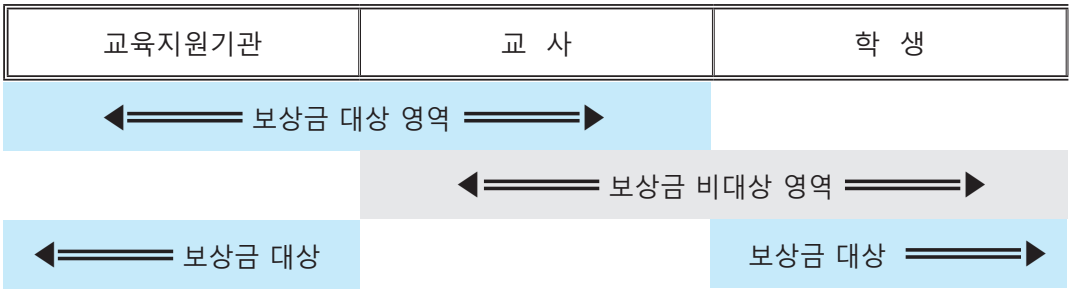

2) 보상대상 저작물 이용량 추정

○ 추정된 수업지원목적의 전체 저작물 이용량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양을 추정하기 위하여 보상 비대상 저작물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작물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과 본인의 논문 및 보고서(직무상 저작물) 활용 부분 입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과 본인의 논문 및 보고서 활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물 비중은 전체의 77.7%입니다.

<수업지원목적 자료제작을 위한 활용자료의 원천>

구 분	교과서/ 참고서	인터넷 사이트	신문/도서 등 기타 저작물	본인논문, 보고서	본인 직접작성	합계
구성비(%)	23.20%	7.36%	47.13%	9.11%	13.20%	100.00%

○ 이상의 결과를 적용한 2012년 기준 교육지원기관의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대상 저작물 총량은 A4 기준으로 2억 7천만 페이지로 추정되었습니다.

<보상 대상 어문저작물 총 수량>

구 분	자료의 형태	총배포량 (천매)	보상대상배포량 (천매)	구성비(%)
오프라인수업참고유인물	인쇄물, 복사물	341,610	265,430	98.29
온라인 수업참고 어문저작물	PDF, HWP, DOC등 파일형태	5,960	4,630	1.71
합 계		347,570	270,060	100.0

3) 포괄보상요율 도출

○ 수업지원목적의 저작물 이용단가는 유사 선행연구로부터 저작물 공급자의 경제적 손실(S1)과 저작물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S2)의 관점에서 추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 1인당 포괄보상요율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요율>

구 분	종량방식(원)	포괄방식(원)
단위	A4 1매	학생 1명
최소, S1	8.7	349.57
최대, S2	43.8	1,759.90
평균, (S1+S2)/2	26.25	1,054.74

○ 고시 적용단가로 최소(S1) 350원과 최대(S2) 1,760원을 도출하였고, 그 중 가장 낮은 보상금 요율을 선택 하였습니다. 포괄방식을 도입하고 그 요율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기준을 택한 이유는 **첫째**, 이 제도의 가장 큰 목표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저작물이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포괄방식은 교육지원기관이 종량방식을 선택하였을시에 산정 장치 구축 등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낮은 보상금 요율을 선택하였습니다.

3. 보상금 지급 기준의 비교

o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포괄방식 지급 기준은 시장에 형성된 저작권 사용료에 비해 저렴한 것은 물론, 유사 보상금 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입니다.
(수업목적보상금 고시 기준 대비 최소 27%~최대 32% 수준)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지급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교육지원기관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o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o 이미지: 1건당 7.7원 o 음악: 1곡당 42원 o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350원으로 함

<타 보상금 지급기준 비교>

구 분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비 고
포괄방식 (학생 1인당)	- 350원	- 일반대 1,300원 - 전문대 1,200원 - 원격대 1,100원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o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의 포괄방식 기준인 350원을 종량방식으로 환산하면 학생 1인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어문만 사용했을 경우 : **어문 50페이지** × 7.7원 = 385원
② 음악만 사용했을 경우 : **음악 8곡** × 42원 = 336원
③ 영상만 사용했을 경우 : **영상 8분**(5분:176원+추가3분:180원) = 356원
④ 이미지만 사용했을 경우 : **이미지 50페이지** × 7.7원 = 38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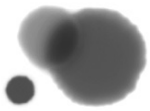

Ⅳ. 보상금 제도 이용 안내

1. 보상금 지급
2. 보상금 분배
3. 실태조사

Ⅳ. 보상금 제도 이용 안내

1. 보상금 지급

가. 업무 흐름도

<포괄방식>

<종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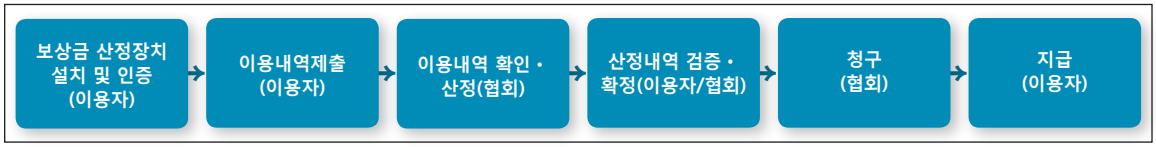

나. 약정체결 안내

1) 목적

○ 약정체결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 간의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히, 관련 저작권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실무적인 내용까지 명확히 정하여 향후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방법

○ 등기우편을 통한 약정관련 서류 교환

3) 약정체결 당사자

○ 이용자 : 교육지원기관(17개 시도교육청)

○ 보상금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4) 보상금 지급방식 및 금액

○ 보상금 지급방식은 「포괄방식」과 「종량방식」중 선택 가능하며, 「종량방식」 약정 희망 교육지원기관은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 보상금 산정장치 등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한 후 수령단체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장치 미비로 인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1) 보상금 산정방식

○ 보상금 산정방식은 교육지원기관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괄방식」은 학생 수를 보상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량방식」은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하는 이용내역서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 산정자료의 작성 요령은 약정서 별지서식 이용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산정은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종량방식) 또는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학생 수'와 보상금 고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 간의 상호 검증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2)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 **포괄방식**

① 보상금 산정

- 수령단체는 교육통계서비스사이트의 전년도 '학생 수'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은 산정한 보상금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수령단체에서 교육지원기관에 청구합니다.

<보상금 산정 예시>

「포괄방식」 보상금 = 보상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학생 수

② 보상금 지급

-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수령단체가 교육지원기관에 청구하며, 교육지원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종량방식**

① 보상금 산정자료(이용내역서 등)의 제출

- 교육지원기관이 「종량방식」을 선택한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이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하여 수령단체가 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고,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저작물의 복제물(강의자료집, 도서류의 경우 표지, CD 및 음반은 제작사 정보 확인 가능한 부분을 복사한 내역)을 수령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내역서 검수 및 보상금 산정

- 수령단체는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하는 이용내역서와 복제물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내역은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한 저작물 이용내역서와 약정체결 시 제공받은 온라인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접속 ID 및 Password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수령단체의 확인 후 산정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은 교육지원기관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되며, 상호 확정완료 후 수령단체는 확정된 보상금을 해당 교육지원기관에 통지합니다.

<보상금 산정 예시>

「종량방식」 보상금 = 저작물 이용량 × 이용 학생 수 × 보상금 지급 기준

※ '영상'의 경우 보상금 기준에 따라 5분 초과 이용시 10초당 10원씩 가산하여 산정함

③ 보상금 지급

-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수령단체가 교육지원기관에 청구하며, 교육지원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종량방식」 선택 시,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저작물 이용내역서'(약정서 <별지서식 • 2>)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금 분배

가. 개념

○ 수령단체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실태조사 자료(포괄) 및 이용내역서, 복제물에 근거 하여 분배합니다. 투명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한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이용분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교육지원기관에서 제출하는 저작물 이용내역서는 보상금 분배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 표시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배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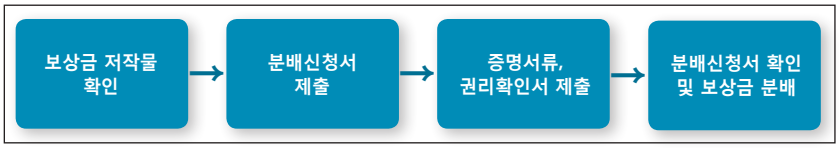

나. 보상금 분배자료 확보

1) 분배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포괄방식)

○ 수령단체는 교육지원기관의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내역서를 작성하고 복사물을 수집하여 분배자료로 활용합니다.

○ 실태조사는 전체 기관 설문조사(기초조사) 후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약정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수행 합니다.**

2) 교육지원기관 제출 자료 활용 (종량방식)

○ 수령단체는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한 이용내역서와 복사물을 검수하여 확정하고 분배자료로 활용합니다.

○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 정보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배 데이터 가공 및 제공

○ 수령단체는 교육지원기관 제출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를 '저작물 정보'로 가공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권자 대상 '이용 저작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보상금 분배

○ 수령단체는 전년도 발생 보상금을 익년도에 분배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 및 보상금 발생 내역을 알리고, 저작권자는 수령단체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저작물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저작권자는 제도를 통해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수령여부에 대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저작물은 보상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보상금 분배 신청

○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보상금 분배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수령단체에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령단체는 서류를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권리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개 인	단 체
· 보상금분배신청서 · 권리관계 확인서 · 저작물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의 경우 상속관계 확인증명서	· 보상금분배신청서 · 권리관계 확인서 · 저작물 사본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양도인의 경우 위임관계 확인증명서

○ 최초 보상금 분배 이후 동일 저작물에 대한 계속적인 이용으로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해부터는 별도 분배신청 절차 없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합니다. 저작권자의 다른 저작물이 추가적으로 이용된 경우 권리관계 확인만 다시 하시면 기타 제반 서류 제출 없이 보상금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태조사

가. 목적

○ 실태조사는 포괄방식으로 징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이용 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교육지원기관')의 편의는 물론 저작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나. 실시 방안

○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 내역 확보를 위해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전문 조사기관의 실태조사 비용은 수령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의 의무만 해주시면 됩니다.

○ 교육지원기관의 담당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교육청 별 조사관리자	· 조사과정을 관리함 · 조사 기간 내내 이용내역서 작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및 조사기관에 협조 및 지원 · 조사 참여를 독려
실태조사업체	· 조사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 기간 내내 이용내역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및 작성 독려 · 이용내역서 작성 및 회수 · 데이터 1차 확인(조사원) · 데이터 2차 확인(관리자)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데이터 제출

다. 조사대상

○ 협회와 수업지원목적보상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교육지원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수업지원목적의 모든 저작물이 조사 대상입니다.

<수집자료 예시>

분 류		내 용
저서/논문	저작자명	저서나 논문의 저작자명, 공동일 경우 모두 표기
	출판년도	저서나 논문이 출판된 연도
	저작물명	저서나 논문명
	출판사명/학술지명	저서의 경우 출판사명, 논문의 경우 학술지명
	웹사이트명	인터넷 자료인 경우 웹사이트 주소
	ISBN	출판물의 ISBN 번호
	이용형태	복제/배포/방송/전송 등
	이용분량	이용한 페이지 수
	이용 프로젝트	저작물을 이용한 프로젝트명
	제작배포수량	제작 및 배포 규모
영상/음악/음원/사진/그림	저작자명	저작자명
	제작년도	영상/음악/음성 자료의 제작년도
	저작물명	저작물명
	제작사명	영상/음악/음성의 저작권을 가진 제작사명
	웹사이트명	인터넷 자료인 경우 웹사이트 주소
	이용형태	복제/배포/방송/전송
	이용분량	이용한 분량 (모두, 일부만 사용한 경우 시/분)
	이용 프로젝트	저작물을 이용한 프로젝트명
	제작배포수량	제작 및 배포 규모
응답자 정보	기관명	소속교육청명 / 기관명
	부서명	부서명
	이용자명	이용자명

라. 조사주기 및 기간

o 조사는 기관을 분류하여 기관별 1회씩 총 4회 실시합니다.

〈 월별 조사 진행 계획 〉

조사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익년 1월
1차	· 조사 준비/홍보(3W)												
	· 실사(4W)												
	· DB구축 및 정리(3W)												
2차	· 조사 준비/홍보(3W)												
	· 실사(4W)												
	· DB구축 및 정리(3W)												
3차	· 조사 준비/홍보(3W)												
	· 실사(4W)												
	· DB구축 및 정리(3W)												
4차	· 조사 준비/홍보(3W)												
	· 실사(4W)												
	· DB구축 및 정리(3W)												
DB 제공					1차			2차			3차		4차

마. 조사 결과물

○ 실태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이용내역서를 얻어 보상금수령단체는 이를 분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 이용내역서 내 이용자정보 구분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변경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작물 이용내역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기관명 1)	기관코드 2)	이용년도 3)	학교급별 4)	과목명 5)	이용학년 6)	저작물명 7)	저작자명 8)	출처 9)	발행연도 10)	저작자소재 11)	종류 12)	이용형태 13)	이용량 14)	이용자수 15)	이용방식 16)	보상기준 17)	보상금 18)

1) (시스템 자동입력)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명
2) (시스템 자동입력)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의 코드
3) 저작물 이용 연도
4) 이용 학교 급별(유치원, 초등교, 중학교, 고등학교)
5) 이용 과목 명
6) 저작물 이용 학년
7) 이용한 저작물의 명칭을 기입
8) 저작자명을 기입하되, 영상물의 경우 제작사 명 입력
9) 단행본의 경우 출판사명, 학술논문의 경우 학회지 명을 기입하고 인터넷에서 획득한 자료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속성 URL포함) 기입
10) 단행본 및 학술논문의 경우 발행연도 기입
11) 저작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경우 기입
12) 보상금 기준에 따른 어문, 음악, 영상물, 이미지, PPT로 구분
13)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또는 공중송신으로 구분
14) 실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의 이용량
15)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명기
16) 온라인(사이버강의 등) 또는 오프라인(대면 수업)으로 구분
17) (시스템 자동입력) 보상금 고시 기준 내역
18) (시스템 자동입력) “이용량 × 이용자수 × 보상기준” 산정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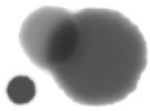

Ⅴ. 이용 가능 저작물 범위

1. 교육목적저작물이용지침
2. 저작물 이용 예시 및 사례
3.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경고 문구

Ⅴ. 이용 가능 저작물 범위

1. 교육목적저작물이용지침 (문화체육관광부, 2013. 08)

본 지침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지원기관,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함에 그 의의가 있다.

1. 목적 및 성격

1) 본 지침은 학교 교육 및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활용을 명시하며 관련 법령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상호이해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리자(권리단체 등)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기관 · 단체 및 교육지원기관 등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2) 본 지침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지원기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 및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동 지침에 근거한 저작물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 또는 권리자단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 재검토 또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용도서의 범의

1)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가 해당되며 교과서와 지도서가 있음
-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단, 일반서적으로 발간된 후 채택된 인정도서가 시중판매 되는 경우는 제외.

2)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와 학습지원기능 등을 부가하여 제작한 디지털교과서도 포함.
「유아교육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가 있음

3. 교육지원기관 및 수업의 범위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지원기관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지원기관 : 학력인정 일성여자 중 · 고등학교, 학력인정 남일초 · 중 · 고등학교 등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직업훈련기관 :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시 중부기술교

육원, 경기도 기술학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교육지원기관 : 서울정진학교, 부산배화학교 등
- 다만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지원기관에 한정됨.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다.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초등학교 · 공민학교,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
- 중앙 및 지방공무원연수원, 각 시도 교육연수원 등

2)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의 수업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 학교 및 교육지원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원장의 지휘 ·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초중등교육법상의 교과수업 및 학교장의 지휘 ·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이에 해당됨

나. 학교 및 교육지원기관에서 그 학교의 장의 관리 · 감독하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

다. 수업은 전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이나 학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야간수업,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다.

4. 교육지원기관 및 수업지원 목적의 범위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 구성원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이에 해당됨

2)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생들의 학력을 보충하고 심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특정수업을 지원.

나. 교원(수업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 강사 등을 말한다.)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지원

5.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지원목적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분의 이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

구 분	이용 요건
이용대상 저작물	■ 공연,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
이용주체	■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방법	■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전시에 의한 이용
이용시간	■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 ■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이용장소	■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
일부분 판단 기준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
허용되지 않는 이용 (이용허락 대상요건)	■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 교원에 의해 매학기 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 판매되는 음원 · 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저작인격권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표시	■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기타	■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불법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음

6. 보상금 지급

1)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제2항에 의거 수업 및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4항 단서에 의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상금 지급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음원 형태의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나. 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1분으로 제한
다. 만료저작물, 공유저작물, 기증저작물,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저작권자의 저작물

3) 보상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명칭, 저작권자, 출처, 이용량 등 저작물 이용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7. 시험문제의 복제, 배포 및 전송

1) 수업목적
가. 학교는 수업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소속된 교원과 학생에게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나.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2) 수업지원목적
가.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

학교, 교육지원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이 그 수업 및 지원 목적상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가. 주요 참고 사항

1) 저작물 이용지침 개정(안) 마련

○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지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저작물 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작물 활용 예시 등을 추가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용기관·주무부처·보상금수령단체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현행의 교육목적저작물이용지침을 보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협의는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약정체결이 완료되는 금년 9월부터 착수하여 2015년도 상반기에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현재 지침 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부분의 사례입니다.

> Q. 복제 할 수 있는 도서 등의 '일부분'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합니까?
>
> A.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에 저작물의 형태별로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이를 10%로 정하고 있고, 호주 저작권법도 일반적으로 1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보나 시처럼 분량이 적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준

○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수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근제한조치

- 이용자는 ID와 PW를 부여받은 자만 접근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 교육지원기관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다른 사설 게시판 등을 통해 수업 지원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교육지원기관이 아닌 개인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복제방지조치

-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및 수업지원목적의 이용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화면 캡쳐 및 우클릭 방지 기능, 그리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 46 페이지「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의 표시」참조

다) 보상금 산정장치

- 종량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상금 산정장치는 필수사항입니다. 보상금 산정장치는 이용된 저작물의 목록 및 다운로드 등의 누적 횟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산정장치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보상금 수령단체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 저작물 이용 예시 및 사례

가. 저작물 이용 조건

1) 조건 :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약정체결 한 경우

2) 내용 : 교육지원기관은 저작물의 일부분(부득이한 경우 전체)을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 가능

3) 이용방법 :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
* 2014. 07. 01. 시행 저작권법 기준

4) 이용가능 저작물 : 국내 및 국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5항)

* 공표된 저작물의 예 : 출판된 도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사진, TV에서 방영된 뉴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음악 등

나) 일부분에 한정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가능

* 전체 이용 가능한 저작물 예 : 시 1편, 사진 또는 그림 등

나. 저작물 이용 예시 및 사례

구 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어문저작물	• 학술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소설, 시, 수필, 칼럼, 연극·영화·드라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가. 도서에 수록된 소설, 시, 수필의 일부를 ①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 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③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나. 극본 또는 시나리오를 ①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 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③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다. 신문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①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 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③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이미지저작물	•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만화, 삽화 등 • 일부 저작물의 경우 이중적 성격 보유	라. 인터넷 백과사전, 국내·외 저널, 기사 내의 그림·사진 또는 도표를 이용 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③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 하는 경우 ④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마.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그 사진, 책표지, 만화 및 포스터를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③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바. 게임로고 또는 게임 영상물을 이용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 강의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구 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음악저작물	• 녹음 형태의 어학저작물 등의 오디오저작물 포함 • 악곡, 악보 등	사. 가요, 팝송, 연주곡을 ①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③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아. 악보를 ①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 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③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영상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물, 동영상 파일 등	자. DVD,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를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에 삽입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③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차.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 화면을 캡쳐 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 강의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 ③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 그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이용의 경우

3.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경고 문구의 표시(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가. 경고문구 활용방안

구분	복제물의 경우	전송의 경우	비고
게재위치	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	전송 개시 첫 화면에 배치	
게재방법	① 별도페이지로, 색지 등을 사용하여 복제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② 한권으로 구성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전체 시작페이지에 1회 ③ 스프링 등 분철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매권 시작페이지에 1회	① 별도 화면으로 구성 ② 1회 전송일 경우 시작화면에 배치 ③ 2회 이상 전송일 경우 매 전송마다 배치 ※ 사이버강의실의 경우 각 교과목별 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	
크기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할 것(굵은 글자 포함)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5초 이상 노출할 것	

나. 경고문구 내용

1) 복제의 경우의 경고문구

>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 2014. . .
> _____ 교육청・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2) 전송의 경우의 경고문구

> 본 사이트에서 교수학습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대중 공개・공유 및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 2014. . .
> _____ 교육청・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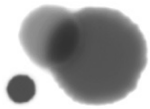

Ⅵ. 추진 일정

Ⅶ. 약정서(안)

Ⅷ. 참고 자료

VI. 추진 일정

1. 수업지원목적보상금기준 고시(2014. 06.)

1) 보상금액 등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3.28~4.21)
 *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 대상

2) 규제심사(4월말 ~ 5월)

3) 고시안 확정 및 관보 게재(6월)

2. 약정체결(2014. 07. ~ 09.)

1) 약정서 발송(7월)

o 표준약정서 확정 및 발송 : 필요시 기관의 특성에 맞춰 수정 가능

2) 약정체결(8~9월)

o 전국17개 시도교육청과의 약정체결이 일시에 진행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o 약정체결 계약 당사자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하되 그 산하기관의 저작물 이용도 보상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보상금 지급

1) 포괄방식

o 교육통계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관내 학생 수를 적용한 보상금을 이용기관에 지급 청구(매년 3월)

2) 종량방식

o 제출 이용내역 산정 후 보상금 청구
 ① 이용내역서 수령(매월, 이용기관 제공)
 ② 이용내역 확정 및 보상금 산정, 청구(매년 1월~3월, 지급기한 매년 4월)
 ※ 전송에 따른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장치설치 여부 인증 및 관리자 계정 요청 실시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

4. 실태조사(2014. 07. ~ 계속)

1) 실태조사 계획 수립('14. 07.)
o 조사대상 및 기초자료 확보 방안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 방식 확정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업체)

2) 실태조사 업체선정('14. 08.)
o 시장조사를 통해 유사 경험이 충분한 조사전문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외부 위원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및 계약

3) 실태조사 실시('14. 09. ~ 계속)
o 조사량 파악에 근거하여 전수조사 또는 샘플링을 통한 표본조사 여부 결정
o 실태조사 실시

4) 분배 방안에 대한 연구('15. 01.)
o 실태조사 이용내역 기준 효과적인 분배방안 연구

5) 분배 방안 확정 및 분배실시('15. 06. ~ 계속)
o 분배요율 확정 및 분배

VI. 약정서(안)

1. 포괄방식 약정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수령단체"라 한다)와 저작물 이용자인 _____(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간의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지원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② "수령단체"라 함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교육지원기관"이라 함은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교육지원기관은 담당자 정보〈별지서식 · 1〉를 수령단체에 제출하기로 하고 담당자 변경 시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한다.
③ 수령단체는 저작물 이용년도의 교육통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제4조(보상금 확정 및 지급) ① 수령단체는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확정하여 교육지원기관에 청구하고, 교육지원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지정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ㅇ 지정계좌 : 220601-04-243194(국민은행)
ㅇ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② 교육지원기관이 제①항에 의한 보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이행사항 협조) ①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태조사에 협조한다.
1. 교육지원기관은 실태조사 및 보상금 지급 등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령단체에 통지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한다.
2. 교육지원기관 담당자는 조사기간 동안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고, 실태조사의 중요성과 기관의 의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3. 수령단체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교육지원기관에 대해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지원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2.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지원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③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 표시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기관은 이용 방법에 따라 〈별지서식 · 2〉의 저작권 경고문구를 사용하기로 한다.
⑤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이 보상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약정 기간)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수령단체의「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지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약정기간 중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약정의 변경 및 이견처리) ①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이 본 약정체결 당시 상호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약정서상의 일부 조항 변경 또는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은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 불이행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의 해지) 다음의 각호의 경우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약정 당사자가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수령단체가 저작권법 시행령 6조에 의해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교육지원기관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재판 관할) 본 약정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조(약정서 보관)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은 본 약정서를 증거로 삼기 위하여 약정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 .

보상금수령단체	교육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교육청
이사장 정 홍 택 (인)	교육감 (인)

<별지서식 • 1>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이용 교육지원기관 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정보			
기관명		대표자	
주소	(우 : -)		
홈페이지			
담당자		부서명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		팩스	

※ 귀 기관에서 제출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수업지원목적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3자(실태조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제공됩니다.

<별지서식 • 2>

저작권보호를 위한 경고문구의 활용

1. 경고문구 활용방안

구분	복제물의 경우	전송의 경우	비고
게재위치	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	전송 개시 첫 화면에 배치	
게재방법	① 별도페이지로, 색지 등을 사용하여 복제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② 한권으로 구성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전체 시작페이지에 1회 ③ 스프링 등 분철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매권 시작페이지에 1회	① 별도 화면으로 구성 ② 1회 전송일 경우 시작화면에 배치 ③ 2회 이상 전송일 경우 매 전송마다 배치 ※ 사이버강의실의 경우 각 교과목별 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	
크기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할 것(굵은 글자 포함)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5초 이상 노출할 것	

2. 경고문구 내용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14. . .
_____ 교육청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제물의 경우 경고문구>

본 사이트에서 교수학습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대중 공개 • 공유 및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14. . .
_____ 교육청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2. 종량방식 약정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종량)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수령단체"라 한다)와 저작물 이용자인_____(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간의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지원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② "수령단체"라 함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교육지원기관"이라 함은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교육지원기관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별지서식 · 1〉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령단체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저작물 이용내역 제출 및 확인) ① 교육지원기관은 〈별지서식 · 2〉의 저작물 이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령단체가 지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매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은 수령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온라인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관리자 계정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오프라인 이용 저작물의 복사물
3. 교육지원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③ 교육지원기관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자료를 허위 또는 미제출한 경우 및 보상금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④ 수령단체는 교육지원기관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보상금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교육지원기관의 사전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5조(보상금 확정 및 지급) ① 수령단체는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확정하여 교육지원기관에 청구하고, 교육지원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아래 지정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ㅇ 지정계좌 : 220601-04-243194(국민은행)
ㅇ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② 교육지원기관이 제①항에 의한 보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이행사항 협조) ① 교육지원기관은 이용내역서 제출 및 보상금 지급 등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령단체에 통지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한다.
② 교육지원기관 담당자는 교육지원기관의 이용내역서 제출 및 보상금 지급 등 업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고, 이

용내역 제출의 중요성과 기관의 의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2.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④ 교육지원기관은 제③항 제3호에 의한 장치에 대해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령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 표시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지원기관은 이용 방법에 따라 〈별지서식 · 3〉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사용하기로 한다.
⑦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이 보상금 이용내역서 및 저작물 이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약정 기간)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수령단체의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약정기간 중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약정의 변경 및 이견처리) ①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이 본 약정체결 당시 상호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약정서상의 일부 조항 변경 또는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은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 불이행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9조(약정의 해지) 다음의 각호의 경우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약정 당사자가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수령단체가 저작권법 시행령 6조에 의해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교육지원기관이 저작권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재판 관할) 본 약정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으로 한다.

제11조(약정서 보관)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은 본 약정서를 증거로 삼기 위하여 약정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 .

보상금수령단체	**교육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교육청
이사장 정 홍 택 (인)	교육감 (인)

<별지서식 • 1>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이용 교육지원기관 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정보			
기관명		대표자	
주소	(우 : -)		
홈페이지			
담당자		부서명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		팩스	

2. 보상금 산정 장치 접근정보			
접근주소(URL)			
ID		비밀번호	

※ 귀 기관에서 제출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수업지원목적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3자(실태조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제공됩니다.

<별지서식 • 2>

저작물 이용내역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기관명 1)	기관코드 2)	이용년도 3)	학교급별 4)	과목명 5)	이용학년 6)	저작물명 7)	저작자명 8)	출처 9)	발행연도 10)	저작자소재 11)	종류 12)	이용형태 13)	이용량 14)	이용자수 15)	이용방식 16)	보상기준 17)	보상금 18)

1) (시스템 자동입력)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명
2) (시스템 자동입력)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의 코드
3) 저작물 이용 연도
4) 이용 학교 급별(유치원, 초등교, 중학교, 고등학교)
5) 이용 과목 명
6) 저작물 이용 학년
7) 이용한 저작물의 명칭을 기입
8) 저작자명을 기입하되, 영상물의 경우 제작사 명 입력
9) 단행본의 경우 출판사명, 학술논문의 경우 학회지 명을 기입하고 인터넷에서 획득한 자료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속성 URL포함) 기입
10) 단행본 및 학술논문의 경우 발행연도 기입
11) 저작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경우 기입
12) 보상금 기준에 따른 어문, 음악, 영상물, 이미지, PPT로 구분
13) 복제 · 배포 · 공연 · 전시 또는 공중송신으로 구분
14) 실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의 이용량
15)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명기
16) 온라인(사이버강의 등) 또는 오프라인(대면 수업)으로 구분
17) (시스템 자동입력) 보상금 고시 기준 내역
18) (시스템 자동입력) “이용량 × 이용자수 × 보상기준” 산정 금액

<별지서식 • 3>

저작권보호를 위한 경고문구의 활용

1. 경고문구 활용방안

구분	복제물의 경우	전송의 경우	비고
게재위치	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	전송 개시 첫 화면에 배치	
게재방법	① 별도페이지로, 색지 등을 사용하여 복제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② 한권으로 구성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전체 시작페이지에 1회 ③ 스프링 등 분철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매권 시작페이지에 1회	① 별도 화면으로 구성 ② 1회 전송일 경우 시작화면에 배치 ③ 2회 이상 전송일 경우 매 전송마다 배치 ※ 사이버강의실의 경우 각 교과목별 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	
크기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할 것(굵은 글자 포함)	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5초 이상 노출할 것	

2. 경고문구 내용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14. . .

_____ 교육청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제물의 경우 경고문구>

본 사이트에서 교수학습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대중 공개 • 공유 및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14. . .

_____ 교육청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Ⅵ. 참고

<관련기사>

문화일보

2014년 03월 06일 목요일 024면 문화/교육

/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제도' 란 /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3)' 행사 장면. 문화일보 자료사진

대학 교육 위축 부작용 없애고 저작권자에 '투명한 분배' 도와

"올해는 저작권 분야 보상금제도와 관련해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입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개정 고시됐기 때문입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07년 개정 저작권법에 명시되었지만 제도 정착에 난항을 겪었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도입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대학 수업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 보상금 제도가 뭔지, 향후 보상금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박영국(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을 통해 알아봤다.

―저작권 분야에서 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생소한데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며 교과서에서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이용하는 저작물마다 사전에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학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게 하는 보상금 제도를 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대부분 보상금 제도 내지는 포괄방식(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3만여 개 교육기관에서 연간 약 450억 원, 호주의 경우 4000여 개 기관에서 연간 약 900억 원의 규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시작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연간 25억 원 가량 징수되고, 수업목적보상금의 경우 연간 30억 원가량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작물 이용의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이용자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는데,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 측면의 조화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과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 부분에서 활용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책 1쪽을 복사하는 데 내는 저작권료가 1장당 11달러 정도 됩니다."

기준 고시안 마련 올해 공포
보상금 한해 30억 징수 예상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사용
출처 찾기 쉽게 시스템 개선

―향후 보상금 제도 정책 방향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오는 3월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고시가 제정되지 못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의 시행을 위한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를 제작할 때 많은 저작물들을 저작권 침해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교육 여건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의 운영상 가장 중요한 정책적 부분은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아서 제대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 본인이 편리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고 보상금 분배 단체들이 이용 저작물에 대한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사용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표시해 보다 쉽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징수된 보상금이 저작권자들에게 손쉽고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참석기관 명단>

구 분	대상처	비 고
시도교육청 17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행법상 수업지원기관 (소속원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직속기관 18처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전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재단법인경기도교육연구원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구원	현행법상 수업지원기관 (소속원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유아교육진흥원 15처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현행법상 수업지원기관 (소속원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공공기관 9처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현행법상 수업지원기관 (소속원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현행법상 수업지원기관 아님

<2013년도 전국 학생 수 통계>

구분	유치원	초등	중학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	특수	기타 *	계
서울	92,400	469,392	304,251	225,493	43,804	14,058	50,768	4,798	6,339	1,211,303
부산	44,217	160,821	110,454	75,614	12,646	7,700	26,100	1,758	1,452	440,762
대구	34,550	136,309	94,394	62,136	19,007	3,409	19,114	1,435	980	371,334
인천	41,594	157,918	100,776	74,064	5,691	4,247	21,308	1,326	772	407,696
광주	22,676	96,055	65,124	50,868	4,183	1,167	11,156	1,017	1,196	253,442
대전	25,263	93,398	59,997	40,038	9,864	2,481	10,429	994	804	243,268
울산	19,032	67,156	45,860	37,005	2,429	1,935	8,494	607	467	182,985
세종	1,305	7,090	3,797	2,227	442	103	756	0	0	15,720
경기	182,231	739,619	458,220	372,216	12,128	13,316	62,920	4,196	3,030	1,847,876
강원	16,007	83,187	54,755	44,774	464	1,698	9,665	982	870	212,402
충북	17,446	88,860	57,623	36,620	4,735	2,121	15,474	1,343	1,076	225,298
충남	26,411	116,216	72,867	54,919	5,163	2,443	13,312	989	815	293,135
전북	23,266	105,135	70,602	54,431	3,997	2,979	13,214	1,297	408	275,329
전남	18,895	99,206	67,888	44,494	7,054	2,474	17,768	961	500	259,240
경북	37,230	135,237	89,128	65,963	8,229	3,833	16,993	1,458	2,127	360,198
경남	50,370	190,166	124,566	97,367	9,214	2,746	18,130	1,571	1,236	495,366
제주	5,295	38,235	23,887	17,841	710	389	4,773	429	471	92,030
계	658,188	2,784,000	1,804,189	1,356,070	149,760	67,099	320,374	25,161	22,543	7,187,384

* 기타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대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도모하기로 한다.

- 다 음 -

1. 각 당사자는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해 그 간 진행되어온 소송을 취하하고 기준 단가 인하를 통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2.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대학별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 적용 기준(2013년 기준)
- 일반대 : 1,300원
- 전문대 : 1,200원
- 원격대 : 1,100원

나. 2011년 및 2012년 징수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는 면제한다.

다. 2014년부터 적용될 보상금 기준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정한다. 다만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적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부 : 대학에 대한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 안내 등

나. 문화체육관광부 :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등

다.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 2013년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발송 등 개별 대학 대상 추인절차 완료, 행정소송 취하 ('13.12.10까지) 등

라.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서울대 등 6개 대학 상대 보상금 청구소송 취하 등

4. 각 당사자는 2013년 12월말까지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하여 2013년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징수가 2014년 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013. 11. 28.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장	이형규 이 형 규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정종택
입회자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	김현주 김현주
입회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임병대

문 의 처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김진엽 사무관 Tel. : 044-203-2482 / E-mail : kjy1415@korea.kr
강훈구 주무관 Tel. : 044-203-2486 / E-mail : hgk23@korea.kr
http://www.mcst.go.kr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Korra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사무처 보상금사업팀>

김준희 팀장 Tel. : 070-4265-2532 / E-mail : jhkim@korra.kr
최경미 사원 Tel. : 070-4265-2537 / E-mail : shanzu@korra.kr
http://www.korra.kr
(157-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